

[보험금 청구서]

제

휴

사

계약정보

계약자	피보험자	주민번호	계좌번호 (증권번호)	계약일	대출금액	최종보험료 납입월

담당자

성명		지점명		연락처	()
----	--	-----	--	-----	-----------

보험금 입금계좌 정보

예금주	
은행명	
계좌번호	

사용인감 확인란

인

B
N
P

파
리
바
카
디
프

생
명
보
험

피보험자 정보

성 명		주민번호		신청인 (유가족)	성 명		관계
주 소					주민번호		
				연락처	자 택	()	
청구내용	사망 (), 장해 (), 진단 (), 기타 ()				휴 대 폰		

구 분	가입회사	가입내용	청구내용(수령여부)

■ 보험사기(허위입원, 고의사고, 사고위장, 피해과장 등)는 범죄로써,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※ 기타 해당 보험금 청구관련 구비서류는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신 청 일 : 년 월 일 신 청 인 : (인)

[07258]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본사빌딩 11층 Tel) 02-1688-1118 Fax) 02-3788-8939

[본인확인서(법인·임의단체용)]

증권번호:

▶ 본 확인서는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한 「정기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」에 의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서식입니다.

■ 고객 정보

법인명	(한글)	(영문)
주소(본점 주소)	외국은 영어로 작성 바랍니다	전화번호
조세목적상 거주지 (본사 설립지국 등) 및 납세자번호		납세자번호 미제출사유 (미국은 미제출 불가)
1	국가명	외국은 영어로 작성 바랍니다
2	국가명	외국은 영어로 작성 바랍니다
3	국가명	외국은 영어로 작성 바랍니다
미제출 사유가 '미취득'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		

■ 확인 사항

■ 아래 질문 ①, ②항은 필수 작성 항목이며, 질문 ③~⑤항은 작성방법 안내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
 ■ 용어 설명 및 상세한 작성방법은 [본인확인서(법인·임의단체용) 설명서]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①	귀 법인은 조세목적상 미국법인 또는 미국기관 등에 해당하십니까? [예]를 선택한 경우 뒷면 ⑥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	☐ 예 ☐ 아니오
②	귀 법인은 예금기관, 수탁기관, 투자법인 또는 특정보험회사(이하 "금융회사")에 해당하십니까? [예]를 선택한 경우 뒷면 ⑦항을 작성하고, [아니오]를 선택한 경우 질문 ③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	☐ 예 ☐ 아니오
③	귀 법인은 보고제외 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십니까? [예]를 선택한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(v)하고, [아니오]를 선택한 경우 질문 ④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☐ 주권상장법인 ☐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법인 ☐ 정부기관(정부소유 법인 포함) ☐ 중앙은행 ☐ 국제기구	☐ 예 ☐ 아니오
④	귀 법인은 능동적 비금융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십니까? [예]를 선택한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(v)하고, [아니오]를 선택한 경우 질문 ⑤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	☐ 예 ☐ 아니오
	☐ 신생법인 ☐ 능동적 일반법인 ☐ 청산 또는 조직변경 중인 법인 ☐ 직전 연도 총 수입의 50% 미만인 수동적수입이고, 직전 연도의 보유 자산 중 50% 미만인 수동적수입을 창출하거나 수동적수입의 창출을 위하여 보유된 경우 ☐ 공익적법인 ☐ 지주회사/재무센터/전속금융회사 ☐ ▶ 수동적수입이란 이자, 배당, 임대료, 수동적자산 매각이익 등에서 발생한 수입을 의미하며,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임대료는 제외한다. ☐ 비금융그룹 ☐ 미국령 소재 법인 ☐ 미국연방세법 제501(c)법인	
⑤	②~④ 질문에 모두 [아니오]로 답변하신 귀 법인은 수동적 비금융법인에 해당합니다. 귀 법인에 실질적인 지배력(25% 초과 지분 적 · 간접적 보유 포함)을 행사하는 해외 납세자가 있으십니까? [예]를 선택한 경우, 뒷면 ⑧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▶ "수동적 비금융법인"이란 직전 연도 총 수입의 50% 이상이 수동적수입에 해당하고, 직전 연도의 보유 자산 중 50% 이상이 수동적수입을 창출하거나 수동적수입의 창출을 위하여 보유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.	☐ 예 ☐ 아니오

■ 본인확인

■ 본인은 본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재 내용에 오류 또는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,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귀사에 통지하겠습니다.
 ■ 본인은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 본 확인서 작성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본 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.
 ■ 본인은 보고대상 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본 서식에 요청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의해 개인정보 및 계좌(계약) 관련 정보가 국세청에 보고되고 거주관할권 등에 제공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하였습니다.

20 년 월 일

법인명 : (인 또는 서명)

확인자(판매인): 은행 지점 (서명)

추가 확인 사항

본 페이지에서는 본인확인서(법인·임의단체용) 앞면의 나. 확인사항에 귀 법인이 기재하신 내용 중 [예]라고 표기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고자 합니다. 해당 항목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후 앞면의 다. 본인확인란을 작성하셔서 당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A. FATCA 보고 제외 (나-① 질문에 [예]를 선택한 경우)

⑥	미국법인 또는 미국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- 다음의 보고 제외 미국법인 유형중 해당하십니까? [예]를 선택한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(v)하시기 바랍니다.			☐ 예 ☐ 아니오
	☐ 주권상장법인 ☐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법인 ☐ 미국 정부기관 등 ☐ 미국령 지역 관할정부(기관) 등	☐ 미국 세법에 따른 면세기구 또는 퇴직연금 ☐ 미국 소재 은행 ☐ 미국 세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신탁 ☐ 미국 소재 특정 규제 대상 투자회사 등	☐ 미국 소재 공동투자신탁펀드 ☐ 미국 소재 특정 면세 신탁 등 ☐ 미국 소재 특정 금융상품 딜러 ☐ 미국 소재 특정 중개인	

B. 금융회사 (나-② 질문에 [예]를 선택한 경우)

⑦	다음 중 해당하는 금융회사 유형에 체크(v)하시고, 아래 a~e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▶ 금융지주회사 및 여신전문 금융회사(신용카드회사, 캐피탈 등)는 금융회사로 분류하지 않습니다.			☐ 예금기관 ☐ 수탁기관 ☐ 투자법인 ☐ 특정보험회사							
	a	보고대상 관할권이 아닌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며, 다른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투자법인입니까? [예]를 선택하고 귀 법인에 실질적인 지배력(25% 초과 지분 직·간접적 보유 포함)을 행사하는 해외 납세자가 있는 경우 ⑧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		☐ 예 ☐ 아니오							
	b	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십니까? ☐ 국내 또는 FATCA 협력관할권 금융회사이면서 미국국세청(IRS)에 의해 비참여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음 ☐ FATCA 협력관할권이 아닌 국가의 금융회사이면서 IRS에 글로벌금융회사등록번호(GIIN)가 등록되어 있음		☐ 예 ☐ 아니오							
	c	미국국세청(IRS)에 글로벌금융회사등록번호(GIIN)가 등록되어 있으면, GIIN을 작성하고, 그렇지 않으면 d~e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
	GIIN: _____										
	d	글로벌금융회사등록번호(GIIN)가 없는 경우, 다음의 공통 비보고 금융회사 중 해당하는 유형이 있습니까? [예]를 선택한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체크(v)하고, [아니오]를 선택한 경우 e 항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		☐ 예 ☐ 아니오							
	<table> <tr> <td>FATCA/CRS 공통 비보고</td> <td>☐ 다수참여 퇴직펀드</td> <td>☐ 수탁자 자료제출형 신탁</td> <td>☐ 정부단체 등의 연금펀드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☐ 소수참여 퇴직펀드</td> <td>☐ 금융회사 자료제출형 투자법인</td> <td>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</td> </tr> </table>				FATCA/CRS 공통 비보고	☐ 다수참여 퇴직펀드	☐ 수탁자 자료제출형 신탁	☐ 정부단체 등의 연금펀드		☐ 소수참여 퇴직펀드	☐ 금융회사 자료제출형 투자법인
FATCA/CRS 공통 비보고	☐ 다수참여 퇴직펀드	☐ 수탁자 자료제출형 신탁	☐ 정부단체 등의 연금펀드								
	☐ 소수참여 퇴직펀드	☐ 금융회사 자료제출형 투자법인	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								
e	글로벌금융회사등록번호(GIIN)가 없는 경우, 다음의 비보고 금융회사 중 해당하는 유형이 있습니까? [예]를 선택한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유형을 CRS 및 FATCA 비보고 금융회사 별로 각각 체크(v)하시기 바랍니다.			☐ 예 ☐ 아니오							
	CRS 비보고	☐ 면제 집합투자기구 ☐ 국내지점전용 금융회사 ☐ 금융위 인정 금융회사									
	FATCA 비보고	☐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 ☐ 피후원 투자기구 ☐ 국내설립 면제집합투자기구 ☐ 지역은행 ☐ 피지배 외국회사 ☐ 제한된펀드 (2017. 1. 1까지만 적용) ☐ 소액계좌 금융회사 ☐ 피후원 폐쇄형 투자기구 ☐ 적격 퇴직연기금 ☐ 특정 투자법인									

C. 실질적 지배자 (나-⑤ 질문에 [예]를 선택한 경우 또는 B-⑦-a 질문에 [예]를 선택한 경우)

귀 법인에 실질적인 지배력(25% 초과 지분 직·간접적 보유 포함)을 행사하는 해외 납세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및 납세자등록번호 (SSN-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ITIN-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)를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영문성명 (대문자)	성(Sur Name)		생년월일
	명(Given Name)		국적
현재 거주지 주소(영문)			
조세목적상 거주지국 (영문)		납세자 번호 (TIN: SSN 또는 ITIN)	납세자번호 미제출 사유 (미국은 미제출 불가)
1			☐ 미발급국가 ☐ 제출불요 국가 ☐ 미취득
2			☐ 미발급국가 ☐ 제출불요 국가 ☐ 미취득
⑧ 미제출 사유가 '미취득'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			
영문성명 (대문자)	성(Sur Name)		생년월일
	명(Given Name)		국적
현재 거주지 주소(영문)			
조세목적상 거주지국 (영문)		납세자 번호 (TIN: SSN 또는 ITIN)	납세자번호 미제출 사유 (미국은 미제출 불가)
1			☐ 미발급국가 ☐ 제출불요 국가 ☐ 미취득
2			☐ 미발급국가 ☐ 제출불요 국가 ☐ 미취득
미제출 사유가 '미취득'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			

